

2025년도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2025년도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지역조직의 R&D 전문지식과 보유자원을 지역의 중소기업의 수요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도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출연(연) 지역조직의 보유역량(고급인력, 첨단 연구시설,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 성장지원
- 총사업비 : 540백만원(정부출연금)
- 사업기간 : '25.7월 ~ '26.6월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연구회 소관 출연(연) 지역조직 2개 기관 이상과 해당 권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공동연구) 형태로 지원
- 지원규모 및 부담금
 - 연구회 지원금 : 과제별 180백만원 * 연구회 지원금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 불가
 - 참여기업 부담금 : 총연구비 25%* 이상(그 중 10% 이상 현금부담)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부담금(이하 기관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NST 지원 연구비 및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연구비 예시 >

(단위: 천원)

연구회 지원금 (A)	참여기업 기업부담금(총연구비의 25% 적용 시)			총 연구비 (C=A+B)
	소 계(B=a+b)	현금(기업부담금의 10%)(a)	현물(b)	
180,000	60,000	6,000	54,000	240,000

- 지원내용 : 출연(연) 지역조직이 동일권역 소재의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맞춤형 R&D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지원 및 R&D 역량 강화

※ 지원 제외 사항

1. 신청기업이 단순서비스 업종이거나, 제품·서비스의 단순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2.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정부지원 부적격 사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등)가 있는 경우
4.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타 사업/연구과제를 통해 동일 내용을 지원 받는 경우(이중수혜방지)
5. 기타 사항은 「신청자격 및 대상」 하단의 '신청 제외 기준' 참고

2.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자격 및 대상 : 연구회 소관 출연(연) 지역조직 2개 기관 이상과 해당 권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공동연구) 형태로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지역조직이 해당 권역*의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성장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해당권역 : 경남권, 경북권,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충청권, 제주권 	필수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과 동일 권역 내의 출연(연) 지역조직*으로서 주관기관과 협업(시너지 창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단,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 권역에 소재하는 출연(연) 본원인 경우에는 참여 가능 	필수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지역조직의 해당 권역* 소재의 중소기업** * 기업 본사가 타 권역이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생산시설 등이 권역 내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의한 중소기업 	필수

※ 신청 제외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참고)

[공통 기준]

- ① 신청과제가 기(既) 개발/기(既) 지원된 경우(과제내용이 유사한 경우도 해당)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R&D 지원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② 신청기업이 단순 서비스 업종이거나, 제품·서비스의 단순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 ④ (참여 제한 여부)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기업만 해당]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신청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자본잠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⑥ 신청기업이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선정 방법

- **추진방식** :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적정성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실시**
 - * 중소기업지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선정평가는 7.8.(화) ~ 7.10.(목) 중 개최 예정(추후 별도 안내)
- **선정방법** : 연구계획서 내용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보통 등급* 이상 과제 중 3개 선정
 -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90점 미만), 보통(70~80점 미만), 미흡(60~70점 미만), 매우미흡(60점 미만)
- **평가기준** : 추진계획의 타당성(20점), 참여기업의 적절성(10점), 연구개발역량 및 수행능력(50점), 과급효과(20점)

< 평가항목별 착안점 및 배점표 >

평가항목	평가착안점	배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타당성 ▪ 개발방향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사업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20
참여기업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대상의 적절성 ▪ 참여기업 R&D 역량의 적절성 	10
연구개발 역량 및 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우수성 ▪ 주관/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기업지원 수행 능력 ▪ 주관 및 참여기관과 기업과의 협력 우수성 ▪ 지역혁신네트워크 활용체계의 적절성 및 우수성 ▪ 보유자원 및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규모 및 산정·집행 계획의 적절성 	50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창출의 가능성 ▪ 기대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지역 산업에 성장·기여할 수 있는 성과목표(2개 이상)의 적절성 	20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력산업 분야 종사 기업 참여시 가점 부여(2점) ▪ '23~'24년도 권역별 지역조직 협의체 도출과제 연계(3점) 	최대 5점
총 점		100

< [참고] 지역별 지역주력산업분야 >

지역	지역주력산업 분야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ICT 융합헬스, 세라믹 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 IT부품, 수송기계 소재부품
충남	스마트 휴먼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대전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 로봇
경북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라이프 케어뷰티, 친환경 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나노융합 스마트부품, 스마트기계, 항노화 메디컬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울산	저탄소 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소재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 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주	지능형 가전, 스마트금형,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광융합, 디지털 생체의료
전북	스마트 농생명·식품, 탄소·복합소재, 미래지능형기계,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정정바이오

※ 관련근거: 지역 기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비상경제장관회의, 2023.2.16.)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hmk6828@nst.re.kr)
 - ▶ (제출서류)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첨부자료 각 1부
- 제출기한 : '25.6.20.(금) 18:00까지'
-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역혁신팀(044-287-7416)

5. 신청시 유의사항

- 마감 기한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 자격 미적격, 허위사실 기재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은 해당 양식 및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 요망
- 중복성 검토
 - 과제신청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세부과제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술하여야 함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NTIS 로그인→ 차별성검토→ 차별성검토시작하기(이후 과정은 관련 절차에 따름)
 - 과제협약 후, 중대한 내용의 중복성 발견 시, 선정취소, 연구개발비 회수 등 해당기관 및 연구책임자 제재 조치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취소 등)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역주력분야 중소기업 참여 해당 여부 검토·확정, 연구비, 과제구성 등 조정 가능
- 연구회 지원금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이 불가함
- 연구비 중 간접비 비율은 기업지원에 초점을 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로 함

<참고> 간접비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거나 높게 적용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정부출연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한다.

3.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 연구비 편성시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내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 포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수정사항 발생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 <사업공고>를 통해 게시

6. 기타사항

- (3책5공) 본 사업은 3책 5공 적용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3항제6호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연구회 「사업지원 과제 관리규칙」 등 적용

7.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등 양식 1부.
- 관련 규정 일체 1부.